http://www.sdc.seoul.kr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목 차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서초구의회가 하는 일 Ⅰ
- 서초구의회가 하는 일 Ⅱ
- 서초구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바로, 그거지!!
각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방자치하고 한단다
주민대표
정치 행정
자율적 처리
OO시
OO군
서초구의회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지역 주권은
누구에게 있지?
아빠 !
지방자치가
뭐예요
그야
주민에게
있겠지요
서초구의회
최고의사
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시
투표함
그럼
지방의회는
또 뭐예요
주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단다

지방의회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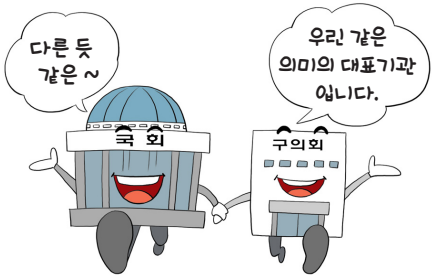

아빠!! 서초구의회 의원은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 있나요??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지위가 주어진단다.
주민대표
지방선거
첫번째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
두번째
결정기관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
결정
세번째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관련된 제반기능 입법 지위
조례
네번째 감사기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을 감시하는 지위
서초구청



서초구에는 서초구의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서초구에는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1991년 초대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제8대 의회까지 27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서초구의 정책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예리한 견제를 통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vs 서초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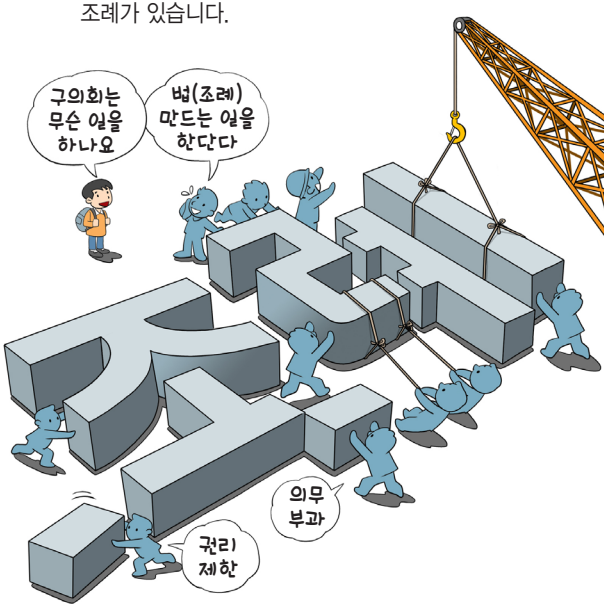
국 회	서 초 구 의 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	서초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
	
법을 만드는 일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도 불립니다.	법 (조례)을 만드는 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 정부가 나라 운영을 잘하는지 국민을 대표하여 살펴봅니다.	일반 구정에 관한 일 구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나라 살림에 관한 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구 살림에 관한 일 서초구 예산을 심의 ·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였는지 감시합니다.

서초구의회가 하는 일 Ⅰ

조례 제정·개정·폐지

법(조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조례는 서초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더불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례 제정 절차

제출 · 발의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 의결

· 제안 설명, 질의, 토론, 심사



본회의 심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송

·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공 포

·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예산심의 및 결산

구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구에서 세운 예산안이 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 제출 (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확 정



결산안 처리절차

승인요구(구청장)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구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심의의결(본회의)
결산승인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서초구의회가 하는 일 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원처리

구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서초구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또는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을 보고 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서의 수리
청원대상:공권력 행사로 받은 피해구제,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채택
구청장이 처리 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 처리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구정질문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회의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처리,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정활동의 백미로 불립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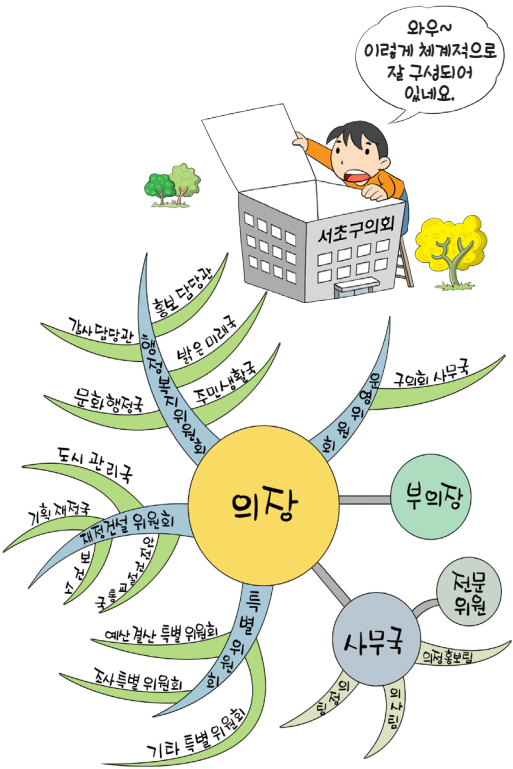
의정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활동

행정현장을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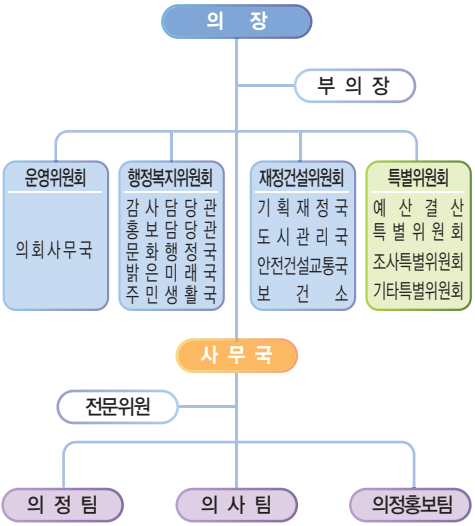
의회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 파악하거나 안건처리를 위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점검 및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구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합니다. 교수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정 현안에 대한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서초구의회 구성 및 운영

서초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들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구성



의원

구의원은 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서초구의회는 현재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상임위원회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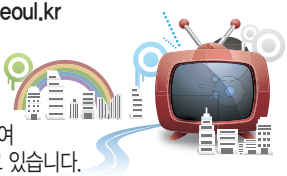
구분	회기	집회	주요활동
정례회	1·2차 합하여 60일 이내	매년 2회	예신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 제·개정등
임시회	15일 이내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0상 요구	조례 제 · 개정, 각종 동의안, 기타 안건처리

의회 참여 안내

홈페이지 : http://www.sdc.seoul.kr

인터넷 방송

의회 인터넷 방송을 집에서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본회의를 녹화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청안내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 참관 또는 방청이 가능하오니, 회의 전일 오후 6시까지 방청 신청후 회의 당일 방문하시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2155-7062~7065)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 청

의회

http://www.sdc.seoul.kr

오시는 길



교통편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10번출구)

버 스 | 양재역 정류장 강남대로 방향 3분거리

- 파랑버스 : 140, 400, 407, 421, 440, 441, 462, 470, 542, 741
- 초록버스 : 3412, 4432
- 빨강버스 : 9404, 9408, 9711
- 마을버스 : 서초08, 서초09, 서초18-1, 서초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의회사무국 ☎ 02-2155-7061~7083